#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

# ◈ 목 차 ◈

◈ 보험용어 해설 ◈ ..... 6

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..... 7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..... 7

제1조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 ..... 7
제2조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범위】 ..... 7
제3조【계약자의 임의해지】 ..... 7
제4조【특약의 보험기간】 ..... 7

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 ..... 7

제5조【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】 ..... 7

제3관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 ..... 8

제6조【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】 ..... 8
제7조【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 ..... 8
제8조【해지환급금】 ..... 8

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..... 8

제9조【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】 ..... 8
제10조【보험금 등의 지급】 ..... 8

제5관 기타사항 ..... 9

제11조【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 ..... 9
(별표 1) 연금지급기준표 ..... 10
(별표 2)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(제10조 제2항 관련) ..... 12
(별표 3) 공시이율의 산출 (제7조 제2항 관련) ..... 13

# ◈ 보험용어 해설 ◈

○ **보험약관**
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

○ **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**
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

○ **보험계약자**
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

○ **피보험자(보험대상자)**
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

○ **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**
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

○ **보험료**
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

○ **보험금**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사망, 장해, 입원,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는 금액

○ **보험기간**
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

○ **보장개시일**
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

○ **책임준비금**
장래의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

○ **해지환급금**
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

#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

##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**제1조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**

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 전환전계약” , 보험계약자는 “ 계약자” , 보험회사는 “ 회사” 라 합니다)

② 계약자는 연금개시 이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
<table>
<tr><td colspan="3">연금지급형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종신연금형</td><td rowspan="2">보증기간부<br>(보증지급기간:10년/20년)</td><td>정액형</td></tr>
<tr><td>체증형(5%/10%, 10년간 체증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보증금액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확정연금형(10년/15년/20년)</td><td>정액형</td></tr>
<tr><td>체증형(5%/10%, 10년간 체증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상속연금형</td></tr>
</table>

③ 제2조(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범위)에서 정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**제2조【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범위】**

이 특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합니다. 다만,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할 수 있습니다.

**제3조【계약자의 임의해지】**

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8조(해지환급금)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**제4조【특약의 보험기간】**

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고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입니다.

## 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**제5조【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】**

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(전환일시금)으로 합니다.

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,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.

## 제3관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

**제6조【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】**
회사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(별표1 “ 연금지급기준표” 참조)을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합니다.

**제7조【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】**
① 이 특약의 연금 및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,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.
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및 별표3(공시이율의 산출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.
③ 제1항의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공시이율은 연복리 2.0%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.
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,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.

**제8조【해지환급금】**
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
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(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)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.

##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

**제9조【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】**
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(회사양식)
2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주민등록등본
3.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)
4. 기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연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**제10조【보험금 등의 지급】**
① 회사는 제9조(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)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,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. 다만,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.
② 회사는 제6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될 때에는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알려드리며,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(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)과 같습니다.

## 제5관 기타사항

**제11조【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**

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,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적립액의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## (별표 1) 연금지급기준표

□ 연금(제6조)

| 구 분 | | 지 급 사 유 | 지 급 내 용 |
|---|---|---|---|
| 종신연금형 | 보증기간부 |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|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(전환일시금)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·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(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)<br><연금지급형태><br>- 정액형<br>- 5%, 10% 체증형(체증기간 10년) |
| | 보증금액부 |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|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(전환일시금)를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·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<br>(다만,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(전환일시금)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) |
| 확정연금형 | |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(10년, 15년, 20년)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|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(전환일시금)를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(10년, 15년, 20년)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<br><연금지급형태><br>- 정액형<br>- 5%, 10% 체증형(체증기간 10년) |
| 상속연금형 | |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| 연금개시시점의 일시납보험료(전환일시금)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<br>(다만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) |

㈜ 1.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.

2. 종신연금형(보증기간부)과 확정연금형에서 체증형의 경우,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% 또는 10%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,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(11차년도 이후)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(10차년도)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다만,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3. 연금을 매월, 매3개월,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4. 종신연금형(보증기간부)의 경우,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(10년, 20년)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"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"과 " 연금지급주기(매월, 매3개월, 매6개월, 매년)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"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

액을 지급합니다.

5. 확정연금형의 경우,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(10년, 15년, 20년)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사망시에는 10년,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“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” 과 “ 연금지급주기(매월, 매3개월, 매6개월, 매년)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”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.
6. 상속연금형의 경우,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.
7. 종신연금형(보증기간부)의 경우, 보증지급기간(10년, 20년) 중의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으며, 일시금은 그 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.
8. 일시납보험료(전환일시금)라 함은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 특약으로 납입(전환)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.

## (별표 2)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(제10조 제2항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적 립 기 간</th><th>지 급 이 자</th></tr>
<tr><td rowspan="5">연금<br>(제6조)</td><td rowspan="2">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</td><td>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금 청구일까지의 기간</td><td>공시이율</td></tr>
<tr><td>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(다만,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)까지의 기간</td><td>공시이율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</td><td>보험기간 만기일(다만,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)의 다음날부터 연금 청구일까지의 기간</td><td>1년이내:공시이율의 50%<br>1년초과기간:1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연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</td><td>공시이율＋1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</td><td>공시이율＋1.5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3">해지환급금<br>(제8조 제1항)</td><td>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</td><td>1년이내:공시이율의 50%<br>1년초과기간:1%</td></tr>
<tr><td>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</td><td>공시이율＋1%</td></tr>
<tr><td>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</td><td>공시이율＋1.5%</td></tr>
</table>

㈜ 1.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, 전환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.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## (별표 3) 공시이율의 산출 (제7조 제2항 관련)

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5: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% ~ 120%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▪ 공시기준이율(%) = 외부지표금리 × 0.5 + 운용자산이익률 × 0.5

㉮ 외부지표금리 :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" 국고채 수익률" , " 회사채 수익률" 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.

◦ 외부지표금리수익률(%) = ( A1 × 0.5 + A2 × 0.5 )

- A1 :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- A2 :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(AAA)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- 가중이동평균이율(Ai) = {Mi(-3)×1 + Mi(-2)×2 + Mi(-1)×3} / 6
  (Mi(-3)은 직전 3개월, Mi(-2)은 직전 2개월, Mi(-1)은 직전 1개월 이율)

㉯ 운용자산이익률 : 운용자산이익률은 " 운용자산수익률" 에서 " 투자지출률"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,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.

◦ 운용자산이익률(%) = B1(운용자산수익률) - B2(투자지출률)

- B1 (운용자산수익률) =

$$\frac{(2 \times \text{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})}{\{\text{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} + \text{전월말 현재운용자산} - (\text{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} - \text{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})\}}$$

- B2 (투자지출률) =

$$\frac{(2 \times \text{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})}{\{\text{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} + \text{전월말 현재운용자산} - (\text{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} - \text{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})\}}$$